

우송조리아카데미운영규정

제 정 2005. 3.

개 정 2021. 4.

제1조 (명칭) 본원은 우송조리아카데미(Woosong Culinary Academy; 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원은 학교법인 우송학원(이하 ‘우송학원’이라한다.)산하 우송대학교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‘각 대학’이라 한다)에 소속된 외식조리학과(조리전공 및 제과제빵전공)와 외식조리유학과 학생들(이하 “재학생” 이라 한다)에게 조리이론 및 실기교육과 더불어 서비스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외식조리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재학생의 조리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 운영
2. 재학생의 조리 및 서비스교육의 현장실습 교육
3. 해외 인턴사원 파견
4. 국내.외 조리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
5. 조리 분야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
6. 일반인 및 조리 관련 분야 종사자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 운영
7. 조리 관련 벤처 운영 및 기술지원
8. 산학협력추진 및 취업지원 사업
9.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사업
10. 기타 본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

제3조 (위치) 본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번지 우송타워에 둔다.

제4조 (원장) ①본원에는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우송학원 내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및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과 학장의 협의에 따라 소속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.(개정2021.04.22.)

②원장은 본원을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 (직원) 본원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, 행정조교, 실습조교 및 근로학생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본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조 (교원 및 시간강사) ①본원의 학과 교육과정 및 특별과정의 강의를 담당할 교원 및 시간강사를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.

1.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수, 초빙교수, 겸임교수를 말하며 우송학원 의 정관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우송대학교 또는 우송정보대학(이하 ‘소속대학’이라 한다)의 교원으로 임명 한다.

2. 각 대학의 장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교원의 급여,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 (운영위원회) ①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각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⑤위원회에서는 각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교육인원 및 교육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8조 (산학 협력위원회) ①본원과 조리 관련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 협력위원회를 두며, 본원의 교수, 외부 전문가 및 협력교수로 구성한다.

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체측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각 대학의 산학 협력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.

③산학 협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원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
2. 전문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
3. 산업체 인사의 강의 및 실습지도 등의 교육 참여
4.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협의와 자문
5. 재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등에 관한 협조
6.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산업체 학습시설 이용
7. 장학금 및 산학협력기금의 확보
8.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
제9조 (교수회) 본원의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원 소속 교수로 이루어진 교수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시행한다.

제10조 (연계교육 협약체결) 각 대학간에 체결한 연계교육협약에 따라 재학생의 연계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의 세부 조항에 따른다.

제11조 (학습기간) ①재학생의 학습기간은 소속 대학의 학칙등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매 학기별 수업일수는 각 대학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 (학기 및 학습형태) ①매년 학기는 2학기로 구분하고 별도로 계절 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학습형태는 이론 강의 및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.

제13조 (교육과정 등) ①본원의 교육과정, 교육인원 및 학습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
제14조 (학습비) ①본원에서 재학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의 등록금 규정에 따라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본원의 특별과정을 수강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본원의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다.

②각 대학의 학생으로서 본원의 교육을 받는자는 소속 대학의 학칙에 따라 수료 및 졸업을 인정 받는다.

제16조 (특별과정 운영) 본원에서는 각 대학 재학생 이외의 외식업체 경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(이하 “교육생”이라 한다)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칙은 다음과 같다.

1.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치과정 및 교육인원, 교육비, 교육일수, 수업시간 등은 교수회의 협의와 운영

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2.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비의 반환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용한다.

3. 본 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 하며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

4.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 태도와 방정한 품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는 해당 과정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제17조 (회계년도) 본 교육원 회계년도는 각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18조 (예.결산) ①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 해의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중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회계집행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2월 말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.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9조 (수입원) 본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1. 학습비
- 2. 대학 보조금
- 3. 기타 수입

제20조 (회계집행) ①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회계업무는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②각 대학 학생의 수업을 위한 강사료, 집기 및 비품구입비, 실험.실습기자재구입비, 실습재료비 등은 소속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1조 (규정준용) 재학생의 학사 및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은 소속 대학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2조 (기타) 본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